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36호 2018. 9. 1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22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3호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 삼척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6호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18 - 10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9. 14.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372 외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9.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산 164-1, 산164-2, 645-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372	2018091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 구간시중점지역 명칭활용(미로, 근덕)	
2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72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01-580 (갈천동)	20180914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 (기존도로명)	
3	강원도 삼척시 미수2길 22-7 (정상동)	강원도 삼척시 미수2길 22-5 (정상동)	20180914	건물번호분할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미수길분기)	
4		이	하	여	백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3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산164-1, 산164-2, 645-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372	3	20180914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 구간시중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72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01-580 (갈천동)	3	20180914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분할	3	강원도 삼척시 미수2길 22-7 (정상동)	강원도 삼척시 미수2길 22-5 (정상동)	3	20180914	건물번호분할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일련번호방식활용(미수길분기)

● 삼척시공고 제2018-722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13일

삼척시장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책 읽는 도시 선포 및 시립도서관 건립과 아울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제2조)
 - 목적: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 및 삶의 질 개선
 - 책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안 제3조)

-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지원 등에 관한 행·재정상 지원 근거 마련

○ 독서문화 진흥 사업 (안 제4조)

- 독서관련행사 개최 등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독서전문가 양성 (안 제5조)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가 양성 시책 추진 관련

○ 관계 기관과의 협력 (안 제6조)

-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등 단체와 협력

○ 포상(안 제7조)

- 공적있는 자에 대한 포상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4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heracless20@korea.com
- 2)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 3) 팩스 : 033-572-2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평생교육과(전화 : 033-570-4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 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
- 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
- 4.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
- 5.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18-3호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0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심각한 인구문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 확대(안 제4조)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 변경(안 제6조)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변경(안 제7조)
 -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29)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2) 전 화 : 033-570-4631
 - 3) FAX : 033-570-4167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9. .
 제출자 : 삼척시장

1. 의결주문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최근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인구문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 확대 (안 제4조)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 변경 (안제6조)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변경 (안 제7조)
 -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지원한다.”를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장 등 비치)”를 “(대장의 비치)”로 하며, 본문 중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출산장려금지원신청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지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출생아지원금	출생아 성명 (), 출생순위 (자녀 중 짝)
	출산장려금	출생아 성명 (), 출생순위 (자녀 중 짝)
	출생아건강 보장보험지급	출생아 성명 (), 출생순위 (자녀 중 짝)

전국 공동 서비스	서비스명	출산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경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입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출산장려금지원액)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영아는 10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4조(출산장려금지원액) ----- -----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한다. ----- -----
제7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지원 신청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지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 -----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삼척시장(참조 : 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25929)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2) 전 화 : 033-570-4669

3) FAX : 033-570-4169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삼척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지원되는 접종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내) : 100% 지원
2. 제1호 외의 경우 : 70% 지원

제5조(위탁의료기관)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 효율을 위하여 삼척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 (신청인이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단부에 명시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확인에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
- 3. 그 밖에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 ② 신청인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은 쿠폰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
 - ③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매일 말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청구서 및 실시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 2. 다른 시·군으로 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쿠폰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5호서식)등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피접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있음()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보호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	전액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 목적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수집 항목			
▶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쿠폰 발급대장

연번	발급일	성명	생년월일	지원구분 (100%, 70%)	쿠폰번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삼척 - 100% 지원 70%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쿠폰

피접종자	
생년월일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동. 읍.면
전화번호 (핸드폰)	

발신 : 삼척시장

○ 예방접종 신청현황

발행일				
접종기간	발행일로부터 3일까지	접종차수		
※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삼척시보건소☎ 570 - 4667, 4669 문의				

【붙임 1】

관계법규 발췌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체
 - 분석시점에서의 추계결과 변동사항 있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계
-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 : 1,780,968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출	1,363,368	104,400	104,400	104,400	104,400	1,780,968	
일반 어르신	1,098,888	92,400	92,400	92,400	92,400	1,468,488	
저소득층	264,480	12,000	12,000	12,000	12,000	312,480	
자체 수입	소 계	1,363,368	104,400	104,400	104,400	104,400	1,780,968
	지방세	1,363,368	104,400	104,400	104,400	104,400	1,780,968
	세외수입						

다. 재원조달 방안

- 2019년 ~ 2023년 : 지방세 일반회계

3. 작성자

작성 자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연 락 처	(033) 570 - 4620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예고내용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